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1494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김정원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5. 1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12.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322,62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22,6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C에게 2015. 7. 7. 300만원을 만기일자는 '대출일로부터 60개월',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각 연 34.9%로 정하여 대여해주었다.

나. D는 2016. 3. 28.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43249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6. 11. 11. 'C는 원고에게 3,467,441원 및 그 중 2,968,554원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2. 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수금 판결'이라 한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93. 12. 31. C의 부(父) E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었는데, E이 2019. 11. 13. 사망하여(이하 '고인'이라 한다) 배우자인 피고(법정상속분 3/13)와 자녀인 F, G, C, H, I(법정상속분 각 2/13)이 고인을 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은 2019.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전부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1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2020. 5. 28. 채권최고액 2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J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는 2021. 3. 2. K단체로부터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C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 및 이자면제 내용의 '개인채무조정확정통지'를 받았는바, C가 이와 같이 원고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인채무조정확정통지를 받은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C가 2021. 3. 2. K단체로부터 개인채무조정확정통지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단체의 채무조정 승인만으로 채무자 C의 채무가 확정적으로 감축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닌 점, 만약 C가 변제금 납부를 지연하는 등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채무조정 효력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C의 채무에 관한 채무조정승인의 효력은 상실되는 점, 나아가 K단체의 승인결정에 의하여 채무가 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와 같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결정은 취소되고 채무자는 조정전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므로(신용회복지원 협약 제25조) 채권자는 신용회복지원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양수금 판결에 기한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L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는 이 사건 양수금 판결에 따른 채무 외에도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2019. 12. 11.) M카드에 987,000원, N회사에 1,982,000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7,117,000원, O회사에 2,909,000원, P회사에 1,890,000원, Q은행에 5,978,000원, R회사에 18,822,000원, S은행에 773,000원, T은행에 6,214,000원 등 합계 약 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2/13)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C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 분할협의 중 C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분할협의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2020. 5. 28. 채권최고액 2,400만 원, 근저당권자 J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수익자인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함이 상당하다.

3)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아파트 중 2020.부터 2021. 1.까지의 실거래가에 대한 평균액인 330,6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가액 330,600,000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위 부동산 중 C의 상속분 상당액은 50,861,538원($=330,600,000\text{원} \times 2/13$, 원미만 버림)이고,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7. 30. 기준 이 사건 양수금 판결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7,322,626원(원금잔액 2,943,816원 + 인수전 이자잔액 922,270원 + 인수후 이자잔액 3,456,540원)이다.

위 피보전채권액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피보전채권액인 7,322,62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7,322,6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C는 고인이 사망하자 2020. 4. 10.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20. 5. 13. 광주지방법원 2020느단570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는바, 상속포기는 사해행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019조 제1항),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2019. 12. 11.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2019. 12. 5. C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C는 적어도 2019. 12. 5. 상속의 개시(고인의 사망)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2020. 4. 10.에 한 상속포기신고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C의 상속포기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모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동구 동 동[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4층 아파트

1층 691.74㎡, 2층 내지 4층 각 654.24㎡,

5층 내지 14층 각 651.81㎡, 지하 672.0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광주광역시 동구 대 5593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4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64.88㎡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55934.7분의 87.274 ㎡.

